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 의안·····2면
○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의안 검토보고서·····105면
○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124면
1. 기 획 예 산 실·····125면
2. 자 치 행 정 과·····143면
3. 도 시 계 획 과·····159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2. 13.(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3년 12월 일
발 의 자 : 김경호,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4조)

라. 화학물질관련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응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24. 1. 5. ~ 1. 11.(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성주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성주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성주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성주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성주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환경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담당 과장

2. 위촉직위원

가.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주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과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3년 12월 일
발 의 자 :	김종식,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라.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안 제15조～제18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24. 1. 5. ~ 1. 11.(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각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4년 1월 일
발 의 자 : 이화숙,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항 본문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으로 변경

3. 조 례 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24. 1. 30. ~ 2. 5.(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결산을”을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 ----------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4년 1월 일
발 의 자 : 이화숙,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1조 제목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변경

나. 제61조 본문 중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으로 변경

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산”을 “결산과 기금결산”으로 변경

3. 규 칙 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예산안 심의)”를 “(예산안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안이”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65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산”을 “결산과 기금결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을 경 우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 심사) ----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이 ---------- ---------- ---------- ---------- ----------. ------ ---------- ---------- ---------- ----------.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 결산과 기금결산---------- ---------- ---------- ---------- -. ---------- ---------- ---------- ---------- --.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2022. 7. 21.) 시행됨에 따라「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성주군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변경) 「성주군 정보화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원칙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바. 지능정보화 교육 규정함(안 제12조)

사.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정보보호 규정함(안 제15조)

자.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 별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735(2023.10.10.)]

2)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7644(2023.10.13.)]

3) 입법예고 : 2023. 11. 21. ~ 2023. 12. 11.(20일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정보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3.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4.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
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7.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능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기반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생산·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성주군 정보화 조례
1998. 5. 15 조례 제979호 개정 2009. 2.25 조례 제1921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삭 제>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주군의 정보화----------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

2.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구축 활용하는 지역 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삭 제>
4.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삭 제>
5.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삭 제>
7. “최고정보책임자(CIO)”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8.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의 개선	향상
5.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정성 유지	<삭 제>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삭 제>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촉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행계획----------.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1.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항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확보 및	4.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양성에 관한 사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통신망 구축, 이용에 관한 사항	5.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해소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방안	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7.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9.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산업과 연계방안	<삭 제>
10. 지역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1.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삭 제>
12.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정보통신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지역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기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군의 시행계획 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군수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있

	는 지능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삭 제>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삭 제>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삭 제>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정보통신기반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

	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생산·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삭 제>
제15(설치)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정보통신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	<삭 제>
제17조(시설장비)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정보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삭 제>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삭 제>
제18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삭 제>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삭 제>
②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삭 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삭 제>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삭 제>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①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	<삭 제>

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삭 제>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삭 제>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삭 제>
제28조(보안관리)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정보통신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	<삭 제>

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① --------- 정보통신 질서----------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삭 제>
<신 설>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보험) 군수는 성주군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삭 제>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	<삭 제>

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교육시설·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관련법령 발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및 제7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 · 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장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골자

가. 가천면 “법전리 신규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1) 사업목적

가천면 법전리 일원에 신규탐방로(법전리~칠불능선)가 지정되어 올해 4월 개방을 앞두고 있어,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가 필요함.

2) 추진계획

- 2024.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2.
 - ·감정평가 실시
 -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의회승인
 - ·토지매입비 추경예산 편성
- 2024. 5.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00,000천원 (군비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매입물건

가천면 법전리 1101번지 외 17필지 47,332㎡, 위지상 건물 80.6㎡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	소재지	지적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법전리 1101 일원	47,332.0	118.0
취득	건물	가천면 법전리 1100-2 일원	80.6	0.5
소계			47,412.6	118.5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차장 · 사무소 · 탐방안내센터 · 생태체험장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5. : 가야산국립공원 신규탐방로 지정 고시(환경부)
 - 2023. 6. ~ 9. : 탐방로 실시설계 완료
 - 2023. 10. :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 2024. 1. ~ 3. : 토지매입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24. 4. :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및 주민 개방
 - 2024. 3. ~ 12. : ‘25년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신청(국립공원⇒환경부)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25. 1. ~ 2026. 12. : 주차장 등 생태탐방로 주변 기반시설 확충

8) 기대효과

- 신규 지정된 탐방로(법전리~칠불능선)는 성주지역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는 코스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신규탐방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가야산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지역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 관광 활성화 도모

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18	47,332	450,000				18	47,332	450,000	
		건물	1	80.6	50,000				1	80.6	50,000	
		기타										
	1. 매 입	부지	18	47,332	450,000				18	47,332	450,000	
		건물	1	80.6	50,000				1	80.6	5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건물										
		기타										
	4. 매 각	부지										
		건물										
		기타										
	5. 양 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건물										
		기타										
	7. 기타 처분	부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토지	가천면 법전리 1100-2	439	72,435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2	토지	가천면 법전리 1101	1,602	70,488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3	토지	가천면 법전리 1083	711	11,732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4	토지	가천면 법전리 1086	3,977	109,368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5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18	16,128	35,482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6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18-1	1,348	2,966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7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18-2	5,929	13,044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8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19	992	4,365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9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22	10,299	56,645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0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22-3	221	1,459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1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22-6	1,627	14,318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2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21-3	2,409	15,899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3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21-5	306	2,020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4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38-1	677	22,341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5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38-2	309	2,039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6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38-3	106	3,498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7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38-8	90	2,970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18	토지	가천면 법전리 산138-10	162	5,346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계		47,332	446,415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가천면 법전리 1100-2	80.6	50,000	사업기간 중 (2024년)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	매입

202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해		당		없		음		

2024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처 분 취 득		해		당		없		음	
계	부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2024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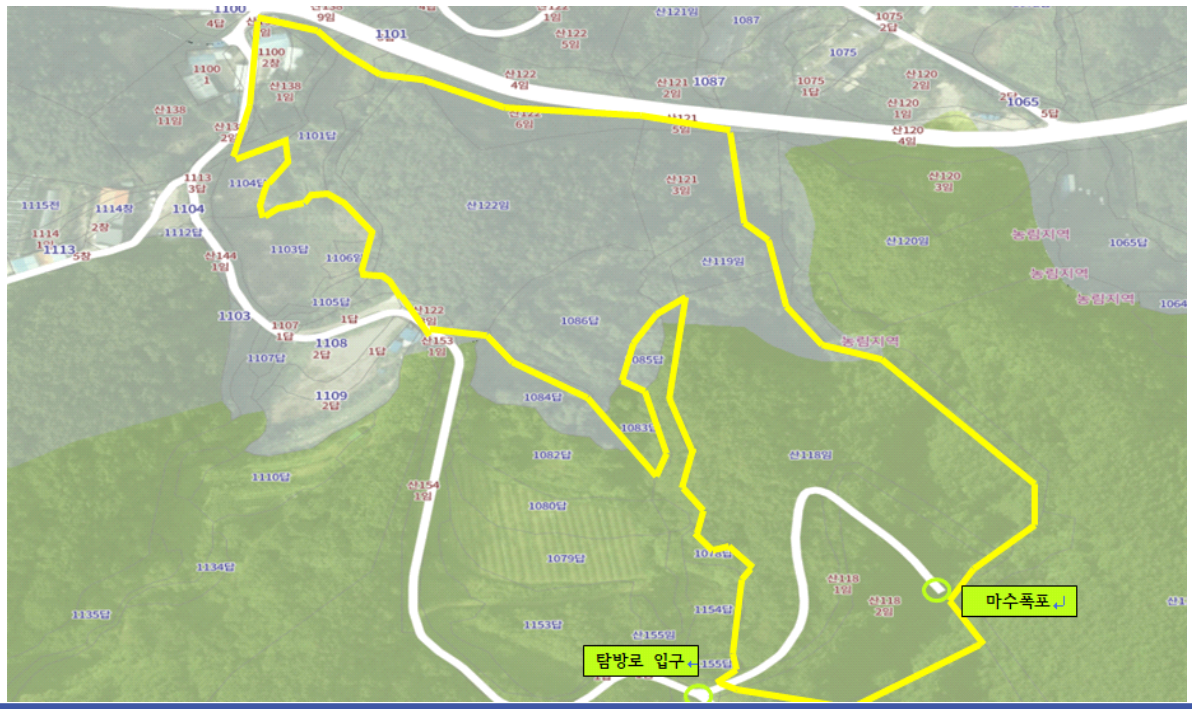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2024년도 기타처분 대상재산목록(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해		당		없		음

법전리 신규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에 필요한 편입부지 매입



조성계획(안)



현장사진-부지



현장사진-건물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폐지이유

성주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치기한이 2023. 12. 31.로, 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로 전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11. 13. ~ 12. 4.(21일)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제3조(관련 규칙의 폐지)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가족지원과 노인복지팀장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운영과 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통합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외의 돌봄 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돌봄시설”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제3호)

나. 다양한 돌봄 제공 기관 간 업무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지역돌봄협의회”로 변경함(제11조)

다. 당연직 위원으로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추가 (제12조)

라.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삭제(제20조)

- (삭제)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변경)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11. 0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없음(2023. 11. 16.)

3) 입법예고 : 2023. 11. 21. ~ 12. 11.

4) 비용추계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한 방과 후 아카데미

다. 그 밖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를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의 제목 “(센터의 기능)”을 “(돌봄시설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돌봄시설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의거”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를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센터 시설”을 “센터 및 돌봄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센터 종사자”를 “센터 및 돌봄시설 종사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필요하도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3. 센터 및 돌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돌봄시설 간의 방과 후"를 "센터 및 돌봄 시설 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돌봄시설"을 "센터 및 돌봄 시설"로, "정보공유"를 "정보 공유"로 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자문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가
 나. 돌봄시설의 대표
 다.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구분하며,”를 “구분하되,”로, “경우”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 및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함께돌봄센터(이하 ” 센터”라 한다)”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한 방과 후 아카데미 다. 그 밖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돌봄시설의 기능) 돌봄 시설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하여 ---------.
제8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의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① ----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도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1. 센터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1. 센터 및 돌봄시설의 -----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2. 센터 및 돌봄시설 종사자의 ----
3.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및 돌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도고 인정하는 비용	4. ---------- 필요하다고 ----------

제10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성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1. 돌봄 종합계획 심의·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센터 및 돌봄 시설 간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센터 및 돌봄 시설 --------- 정보 공유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	② 협의회----------

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船)한다	----------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돌봄 분야 전문가	1. 당연직 위원 :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돌봄 시설 대표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가 나. 돌봄시설의 대표 다.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돌봄 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	<삭 제>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운영위원회에서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삭 제>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있다.<단서 삭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5조(위원의 해촉) ---- 위원----------.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등) <신 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2. (생 략)	② 회의---------- 구분하되, ----------경우에 ------. 1.·2.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제1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	<삭 제>

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 및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52호, 2022.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제2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1조(운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 ·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 ·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비용발생요인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기자재비

나.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4.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예정지 등 참고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어울림복합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예정(2024년도)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과목별/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003,586	163,753	240,191	299,821	299,821
기자재비	40,000	20,000	20,000	0	0
운영비	122,200	18,800	28,200	37,600	37,600
인건비	841,386	124,953	191,991	262,221	262,221
운영예정개소수	2	1	2	2	2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기자재비	· 20,000(국100%)	
인건비	· 센터장 : 40,724(국50%, 도15%, 군35%) · 돌봄교사 : 28,776(국50%, 도15%, 군35%) · 4대보험 및 퇴직금 : 20,857 (국50%, 도15%, 군35%) · 코디네이터 : 31,236(도30%, 군70%) · 종사자수당 : 3,360(도30%, 군70%)	
운영비	· 다함께 돌봄 일반운영비 : 12,800(국50%, 도15%, 군35%) · 프로그램운영비: 6,000(도30%, 군7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과목별/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003,586	163,753	240,191	299,821	299,821
국 비	302,504	62,142	64,554	87,904	87,904
도 비	204,325	30,484	46,691	63,575	63,575
군 비	496,757	71,127	128,946	148,342	148,342

5. 제도개선 등 기타 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장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기 결정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

나. 면 적 : 81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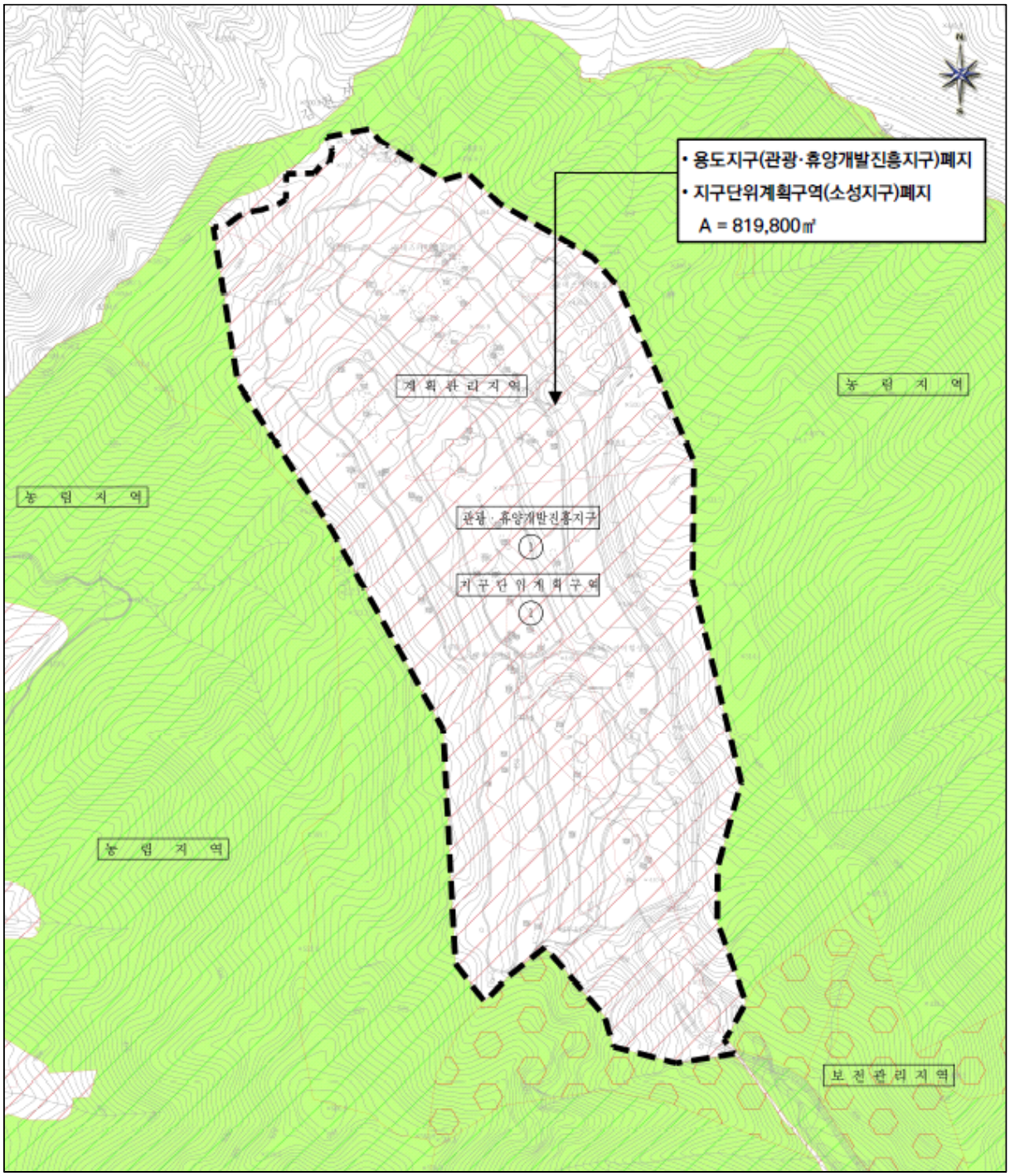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소성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	819,800	감) 819,800	0	경고 제116호 (2004.6.5.)	

라. 추진계획

- '22. 12. 주민 공람공고
- '23. 01. 관련부서 협의
- '24. 02. 의회 의견청취
- '24. 03. 도 승인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
- '24. 05.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3.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1~3조)

나.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안 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4052(2023.12.4.)]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55432(2023.11.30.)]

3) 입법예고 : 2023. 12. 14. ~ 2024. 1. 3.(20일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성주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 쪽)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③ 주 소	(연락처:)			
④ 사 업 의 종 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⑥ 차량 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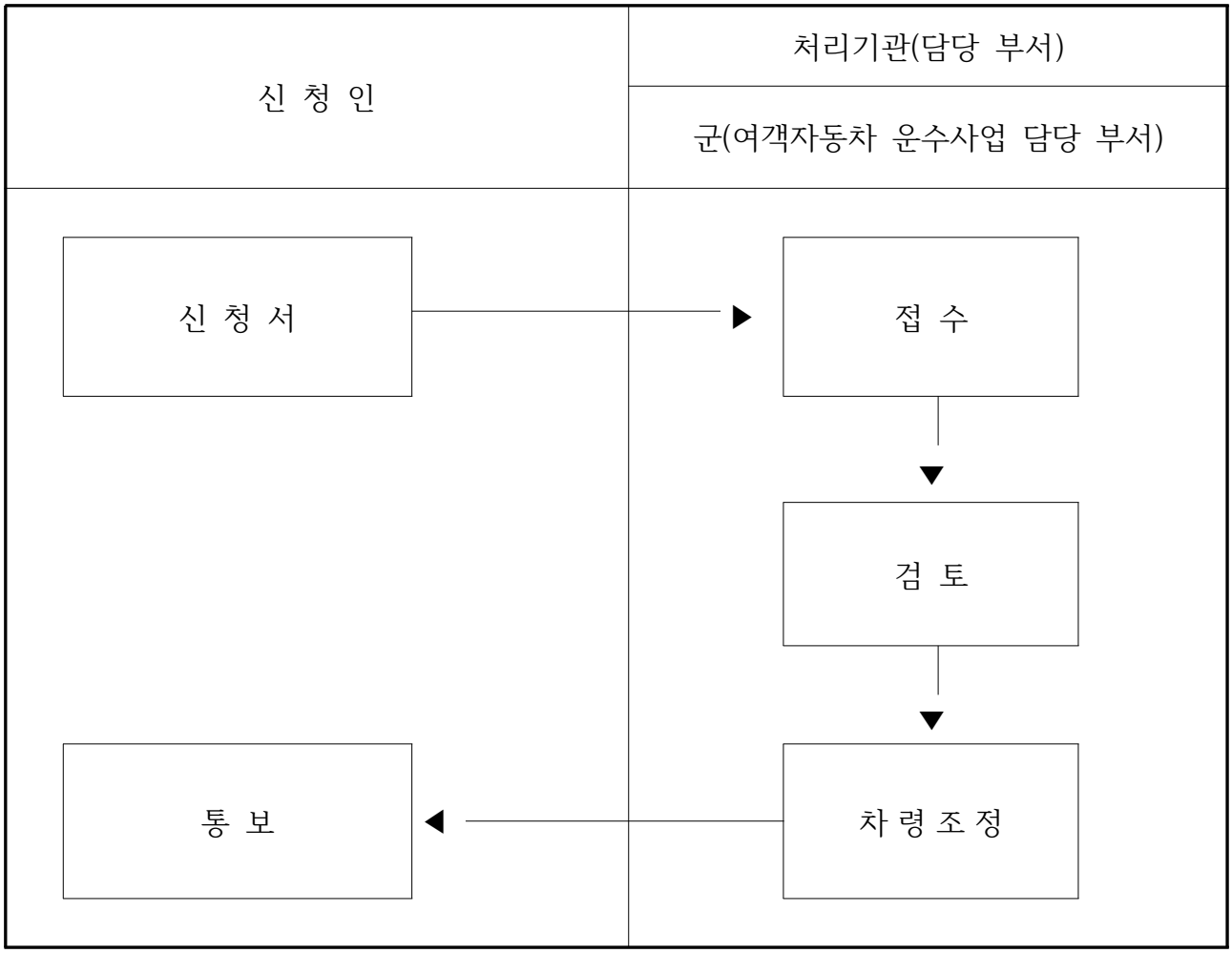
성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11.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 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 · 도지사가 해당 시 · 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2012. 6. 29., 2015. 12. 9., 2017. 2. 28.>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9., 2017. 1. 20.>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새마을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2. 13.(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3조)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마. 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응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내에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25개소로, 화학물질 사고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화학 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라.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안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3년 9월 22일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 및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임명의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항 본문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1조의 제목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변경

나. 제61조 본문 중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으로 변경

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산”을 “결산과 기금결산”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제61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2022. 7. 21.) 시행됨에 따라「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성주군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변경) 「성주군 정보화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원칙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바. 지능정보화 교육 규정함(안 제12조)

사.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정보보호 규정함(안 제15조)

자.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 별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735(2023.10.10.)]

2)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7644(2023.10.13.)]

3) 입법예고 : 2023. 11. 21. ~ 2023. 12. 11.(20일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주군에서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므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골자

가. 가천면“법전리 신규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1) 사업목적

가천면 법전리 일원에 신규탐방로(법전리~칠불능선)가 지정되어 올해 4월 개방을 앞두고 있어,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가 필요함.

2) 추진계획

- 2024.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2.

· 감정평가 실시

·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의회승인

· 토지매입비 추경예산 편성

- 2024. 5.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00,000천원 (군비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매입물건

가천면 법전리 1101번지 외 17필지 47,332㎡, 위지상 건물 80.6㎡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	소재지	지적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법전리 1101 일원	47,332.0	118.0
취득	건물	가천면 법전리 1100-2 일원	80.6	0.5
소계			47,412.6	118.5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차장 · 사무소 · 탐방안내센터 · 생태체험장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5. : 가야산국립공원 신규탐방로 지정 고시(환경부)

· 2023. 6. ~ 9. : 탐방로 실시설계 완료

· 2023. 10. :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 2024. 1. ~ 3. : 토지매입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24. 4. :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및 주민 개방

· 2024. 3. ~ 12. : '25년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신청(국립공원⟹환경부)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25. 1. ~ 2026. 12. : 주차장 등 생태탐방로 주변 기반시설 확충

8) 기대효과

- 신규 지정된 탐방로(법전리~칠불능선)는 성주지역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는 코스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신규탐방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가야산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지역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 관광 활성화 도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태관광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가천면 법전리 1101번지 외 17필지 일원에 47,332㎡, 위지상 건물 80.6㎡를 사업비 5억원으로 해당 지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차장 조성으로 신규 지정된 탐방로를 찾는 탐방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성주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치기한이 2023. 12. 31.로 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로 전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11. 13. ~ 12. 4.(21일)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9일 제정된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성주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만료(2023. 12. 31.)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 등 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4호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운영과 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통합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외의 돌봄 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돌봄시설”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제3호)

나. 다양한 돌봄 제공 기관 간 업무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지역돌봄협의회”로 변경함(제11조)

다. 당연직 위원으로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추가 (제12조)

라.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삭제(제20조)

- (삭제)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변경)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11. 0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없음(2023. 11. 16.)

3) 입법예고 : 2023. 11. 21. ~ 12. 11.

4) 비용추계서 :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운영과 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통합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 돌봄 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돌봄 제공 기관 간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및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회로 변경하고, 돌봄협의회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기 결정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

나. 면　　적 : 819,800㎡

다.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소성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	819,800	감) 819,800	0	경고 제116호(2004. 6.5.)	

라. 추진계획

- '22. 12. 주민 공람공고
- '23. 01. 관련부서 협의
- '24. 02. 의회 의견청취
- '24. 03. 도 승인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
- '24. 05.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에 819,800㎡ 규모의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기결정되어 운영 중이었던 체육시설이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군 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요청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1~3조)

나.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안 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4052(2023.12.4.)]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55432(2023.11.30.)]

3) 입법예고 : 2023. 12. 14. ~ 2024. 1. 3.(20일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 이내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었던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성 주 군 의 회

기획예산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공직사회 실현
2.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3. 대내외적 군정운영 평가 내실화
4. 상생과 협치를 위한 의회운영 지원
5.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다양한 통계수요 충족
6.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예산 집행
7.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
8.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9. 엄정한 공직감찰 및 예방적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10.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성주 달성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교부세 확보 합동대응체계 구축
2. 공동주택 영상 모니터(타운보드) 활용 군정 홍보
3. 청렴의 생활화!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3 주요사업 조서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업무

❑ 기구 및 인력 - 4팀, 21명

(정원/현원)

구 분	계 정원/현원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계	21 / 21	8	4	4	5
4급	2 / 2	2	-	-	-
6급	6 / 10	3	1	2	3
7급 이하	13 / 9	3	3	2	2

❑ 주요기능(분장업무)

구 분	담 당 사 무	비고
기 획 팀 (이 호 영)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공약사업, 의회협력체제 구축, 평가(성과) 관리, 통계업무, 혁신 등	
예 산 팀 (조 기 인)	예산편성, 건전재정운영 및 주요사업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홍 보 팀 (김 순 일)	군정홍보, 보도지원, 공보발간, 군정홍보사진・영상촬영, 군정홍보시설물 설치・관리	
감 사 팀 (석 도 경)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계약・원가심사, 청렴, 공직자재산등록, 법무 및 소송업무, 규제개혁・적극행정	

2. 기본현황

❑ 2024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4 본예산 ('23 본예산)	6,270 (6,210)	5,630 (5,460)	401 (307)	239 (443)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계	조 례	규 칙	규 정
487	323	91	73

❑ 홍보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준공년월	시 설 내 용	비고
성주참외 홍보조형물 (고속도로변)	2008. 01. 24.	- 높이 : 30M. 철골조 - 특산물 홍보	
읍시가지 이정표를 활용한 이미지 (성주8경)홍보	2010. 04. 11.	- 크기 : 5M × 2.5M - 성주참외, 성주8경 홍보	10개소
군청현관 지능형 멀티홍보관	2012. 06. 11.	- 48“ 모니터 12대(좌측) - 46“ 터치스크린 2대(우측) 46“ 3D 모니터 1대 - 군정홍보 영상 방영 등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공직사회 실현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원 마인드 함양 및 상호 간 협업 확대를 통한 행정 체질 개선

◇ 중앙 및 도 시책과 연계한 사업발굴 및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 군정 주요업무 체계적 관리로 군정 기획 · 조정 기능 강화

○ 책임있는 군정구현을 위해 심도있는 확인·조정·환류 강화

○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현안의 선제적 발굴로 행정역량 강화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 대응방안 마련

○ 심도있는 토의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군정 이해도 제고

주 요 회 의	시 기	비 고
○ 확대 간부회의 /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매월/매주	
○ 군수 지시사항 추진보고회	분기별	
○ 군정 현안업무 점검회의	반기별	필요시 추가
○ 공약사항 보고회	반기별	

❑ 국정과제 및 도 시책연계 신성장 동력 발굴

○ 중앙 및 도 정책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 중앙부처 예산, 주요정책 분석 및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사전 업무 연찬 철저

○ 국가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북도·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 세일즈 행정 추진

2.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공약 이행률 제고
◇ 공약이행 실적 수시 점검, 매니페스토 교육 등 평가관리 철저

❑ 추진개요

○ 근　　거 : 「성주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 기　　간 : 2022. 7. 1. ~ 2026. 6. 30. (4년간)

○ 추진방향

- 미착수, 부진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 모색
- 민선8기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 공약사항 현황 : 8개 분야, 102개 공약 ('23. 12월말 기준 이행률 70%)

○ 부서별 현황

계	기획예산	자치행정	미래전략	관광	문화	주민	가족	환경	농정	산림축산
102	3	2	3	5	6	4	9	5	15	2
	기업	도시	새마을교통	안전	건설	보건소	센터	체육시설	자원순환	
	9	7	2	1	10	2	7	4	6	

❑ 추진계획

○ 대외 평가 준비 : 상반기 중 홈페이지 게시(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 추진현황 정기 점검 및 보고회 개최(반기별 1회)

○ 실과소별 공약 이행실적 수시점검

○ 직원 대상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실시

3. 대내외적 군정운영 평가 내실화

◇ 중앙·道의 역점 시책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국-도-군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신뢰받는 군정 운영과 주민 만족 행정 서비스 구현

❑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 전략 대응

○ 평가대상 : 22개 시·군 (시부/군부 구분평가)

○ 기 간 : 2024. 6. ~ 2024. 12.

※ 실적기간 : ' 24. 1. 1. ~ 12. 31. (1년간)

○ 평가지표 : 94개(합동평가 연계지표, 도정역점시책 자체지표)

○ 실적관리 방안

- 지표보고회 개최 : 부진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대책 보고
- 지표담당자 수시 면담 : 지표별 평가산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숙지와 지표별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2023년(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 군정성과 인센티브제 운영

○ 추진대상 : 각종 평가 우수부서, 국가(도)예산 확보부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 추진계획

- 각종 대외평가 우수부서 및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선정부터 인센티브 지급
-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인사가점 부여로 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 2023년 운영 : 11개 부서, 1,800만원 지급

4. 상생과 협치를 위한 의회운영 지원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행정 강화
◇ 의회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군정 반영 등으로 정책협력 활성화

❑ 군-의회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정활동 지원

○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요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의 자료·정보 공유 및 현장 활동 지원

❑ 의회 회기 운영 지원 및 간담회 운영

○ 정례회 운영
- 계 획 : 2회(44일 정도)
- 내 용 :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기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의결,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각종 의안 처리 등

○ 임시회 운영
- 계 획 : 연중 필요 시
- 내 용 : 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처리, 주요시설 및 사업장 방문, 각종 의안 처리

○ 간담회 운영
- 월 2회 정기 간담회 개최(매월 5일, 20일)
-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사항 적극 반영

5.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다양한 통계수요 충족

◇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통계조사 및 정책 통계의 체계적 근거로 군정 주요시책에 적극활용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사업체 및 군민
○ 사 업 비 : 130,221천원(국비 72,216, 도비 29,494, 군비 28,511)
○ 사업내용 : 사업체,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실시

❑ 주요내용

○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자체 통계 작성
○ 산업활동의 구조와 분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국가통계조사 추진

❑ 추진계획

○ 사업체조사 : 2024. 2. ~ 3.
- 대 상 : 성주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
- 내 용 : 사업장 운영장소, 매출액, 사업종류 등 사업체 전반

○ 사회조사 : 2024. 4. ~ 5.
- 대 상 : 660가구(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 내 용 : 주관적 행복, 교육 만족도, 소득과 소비, 지역발전 방안 등

○ 광업·제조업조사 : 2024. 6. ~ 7.
- 대 상 : 2023년 12월 말 종사자수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 내 용 :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 가구주택기초조사 : 2024. 9. ~ 10.
- 대 상 : 관내 빈집포함 모든 가구와 거처 (약 2만 가구)
- 내 용 : 건축연도, 주거시설, 옥탑여부, 난방시설, 총 방수 등

❑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가통계 확립을 위해 통계조사 성실 수행
○ 지역사회 분석과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군정 발전

6.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예산 집행

◇ 재정수입 여건을 적극 반영한 효율적 예산 편성
◇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예산편성

○ 편성계획 : 추경 3회(수시), '25년 본예산 편성(11월 중 의회 제출)

○ 재정여건 :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완만한 증가세 예상

○ 편성방향

- 가용재원 최대 활용한 본예산 편성 및 연중 예산 전략적 활용
- 지방보조금 및 현금성 복지사업 집중관리, 연례반복·관행적 예산편성 탈피 등 재정 건전성 강화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 범위 내 사업 발굴 · 편성

※ 사전절차(보상, 행정절차 등)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사업 등 구조조정

-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중심 발굴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속집행

○ 추진목표 :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철저

○ 추진계획

- 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 · 투자사업 집중관리
- 기본계획 수립,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토지보상 협의 등 연초부터 즉시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준비 철저
- 부서별 추진실적 수시 점검, 부진부서 집중 관리를 통한 집행 독려

7.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확립에 기여
◇ 군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보도 콘텐츠를 강화하여 체계적·전략적인 군정 홍보 실시

❑ 홍보내용

○ 군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문화·관광자원, 대표 축제, 우수 농·특산품 등

❑ 홍보방법

○ 뉴미디어
- 성주군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유튜브) 채널운영
- 군정 생생뉴스(주 4회) 송출

○ 신 문 사 : 일간지(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인터넷·통신사 보도자료 배포
- 일반보도자료(매일) : 부서별 주요업무, 각종 행사 및 주민 생활정보 등
- 기획보도자료(수시) : 역점사업, 농업·관광·지역경제 등 테마별 홍보

○ 방 송 사 : 지상파 및 종편 TV방송
- 군정 주요시책 및 농·특산품 광고, 프로그램 제작 협찬, 인터뷰·취재 지원 등
- 군 대표 축제 및 행사(참외마라톤, 가야산산행대회)시 집중 홍보

○ 옥외광고 : 대형 전광판, 타운보드 등
- 전 광 판 : 주요 도로, 철도역사·KTX, 대형마트 등
- 타운보드 :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홍보 영상 송출
- 랩핑광고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등

※ 2023년도 서울역 외 10개소 시행

8.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 지역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 방 향 : ①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②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개혁 ③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 주요내용

○ **(제도적 정비)**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한 지속 정비

- 정비대상 : 자치사무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규제로써 그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폐지·완화 여지가 있는 규제

* '23.12월 기준 등록규제: 134건

○ **(행정대응)** 행정편의 관행, 소극행정 행태 개선 → 적극행정 정착

- 추진방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 제도, 법령해석(실무사례집, 대법원 판례 등)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

 * 공유·확산 : 군 홈페이지 활용(우수사례 전파 등)

○ **(업무역량)** 잦은 보직 변경, 인센티브 미흡 등 업무역량 편차 → 역량 강화

- 추진방법 : 콘테스트, 역량강화 교육

○ **(주민참여)**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군민참여 기회 확대

-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대상「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적극 운영 및 규제의견 청취

 ※ 지방규제혁신 전담관(부군수), 관련 사업부서, 전문가 협동 방문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대국민 규제혁신 공모전 적극 홍보

○ **(조직운영)**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역 할 :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존치 입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사전컨설팅 요청사항 심의

9. 엄정한 공직감찰 및 예방적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 공직기강에 대한 높아진 군민의 기준에 맞춘 엄정한 공직감찰로 대 군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 사전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실시로 관행이 아닌 적법한 행정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감사 등 실시계획 개요

○ 공직기강 확립 감찰

- 기 간 : 연 7회(사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대 상 : 실과소, 읍·면
- 내 용 : 부정청탁, 민원불편 사항, 소극행정, 근무태만 등

○ 종합·부분감사

- 기 간 : 자체감사 계획에 의함
- 대 상 : 자원순환사업소, 용암면, 대가면, 가천면, 상하수도사업소
- 내 용 : 처분·처벌 위주의 통제적 감사에서 벗어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적 감사를 실시

○ 사전컨설팅감사

- 기 간 : 연중 상시
- 대 상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운영절차 : 해당부서 신청 → 기획예산실 검토 → 경상북도 감사관실 컨설팅 →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컨설팅
- 효 력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은 상부감사 면제
- 내 용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을 타파하고 불분명한 법령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군민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 기대효과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

○ 사전예방적 감사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

10.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성주 달성

◇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활동의 자율적 참여·실천을 통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분야별 추진계획

○ 반부패·청렴주간 운영
- 기 간 : 2024. 8월 중(1주간)
- 대 상 : 전 직원 및 군민
- 주요행사 : 청렴소통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힐링콘서트 등

○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 실시
- 조사기간 : 2024. 4월 중
- 대상기간 : 2023. 7. 1. ~ 2024. 4. 30.
- 조사대상 : 공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민원인 및 공무원

○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면담
- 기 간 : 2024. 5월 ~ 6월 중(2개월)
- 대 상 : 전 직원
- 추진방법 : 1:1 면담을 통한 직원 청렴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 청렴 마이크로러닝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4. 4. ~ 9.
- 대 상 : 전 직원
- 추진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 자가학습

○ 청백 e-시스템 운영
- 지방행정시스템(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 연계
- 복지, 인허가, 건축, 환경, 보건 등 비리 개연성분야 사전 모니터링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지속 추진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 공직자 청렴실천 의지 제고를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정착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교부세 확보 합동대응체계 구축

◇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보통교부세 확보대책 마련
◇ 인센티브 확보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한 자체노력 추진 철저

❑ 보통교부세 확보 필요성

○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한 군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액전망으로 군 세입확충에 악영향 ※ 전체 세입대비 보통교부세 비중: 36.48% (`24년 본예산 기준)

⇒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효율적 재정운용 및 재정안정화 도모

❑ 보통교부세 산정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 현재)
보통교부세 최종산정분	1,838	1,732	1,931	2,665	2,236	2,250

❑ 추진계획

교부세 산정 합동대응팀 구성 운영 (기초자료 준비 총력 대응)	자체노력도 인센티브 확보	보통교부세 감액 제로화 추진
예산팀, 통계대상팀	예산팀, 부과팀, 징수팀	전 부서
· **'교부세 확보 합동대응팀' 구성** - 시기: 7 ~ 8월 - 대상: 통계자료 관련부서 - 방식: 오차검증, 증빙자료 작성 · **분기별 해당부서 현황점검 실시**	· **자체노력도 분야별 자체분석 및 직무교육 실시** · **자체노력도 추진상황 점검 관련 회의 수시 개최**	· **각종 감사 수감 시 준비 철저** · **감액심의 시 적극적 소명 및 처리상황 신속 보고** ※ 감액심의 연 2회(상·하반기) · **감액관련 감사적발사례 전파**
2024. 3. ~ 8. ※ 7~8월 집중운영	2024. 1. ~ 12. (연중)	2024. 1. ~ 12. (연중)

2. 공동주택 영상 모니터(타운보드) 활용 군정 홍보

◇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영상 모니터(타운보드)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대표축제, 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95,000천원(19,000천원/월 × 5회 정도)

○ 사업대상 :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모니터(타운보드)

※ 타운 보드 설치 대수 : 대구 3,128대 15만 가구 / 경북 1,794대 9만 가구

○ 주요내용

- 군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
- 군 대표 축제 및 행사, 문화관광자원, 우수 농특산품 등 홍보
- 인근 지자체 타깃 아파트별로 집중 홍보 (대구 달서구, 달성군, 김천, 구미, 칠곡 등)



< 타운보드 광고 예시 >

❑ 추진계획

○ 2024년도 옥외광고 추진계획 수립 시 타운보드 광고 계획 반영('24. 1.)

- 전광판 옥외광고 계획 일부 조정 후 타운보드 광고 시행

○ 2024년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홍보 기간 집중 추진('24. 5.)

❑ 기대효과

○ 타 옥외광고 대비 광고 집중도가 높고 일상생활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광고 노출 가능

○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영상 모니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복적인 시각 정보 제공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3. 청렴의 생활화!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 부서별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렴실천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4. 4. ~ 10.

○ 추진대상 : 전 부서(실과소읍면)

○ 추진방법 :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 운영방법

- 실과소읍면 :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기획예산실 : 추진현황 점검, 우수시책 선정 및 공유

❑ 세부추진계획

○ 시책추진 : 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선정·추진

- 부서 업무와 연계하여 외부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시책
- 조직문화개선 및 직원 소통 활성화 등 내부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시책
-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등 취약분야 개선 시책
- 기타 청렴 분위기 확산 및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

○ 시책평가 :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우수 시책 공유

※ 우수부서 3개 선정 및 시상(최우수 500천원, 우수 300천원, 장려 200천원)

○ 추진일정

추진계획 제출 ('24. 4.)	→	청렴시책 추진 ('24. 4.~9.)	→	추진실적 제출 ('24. 9.)	→	실적평가 및 시상 ('24 10.)
각 부서 → 기획예산실		각 부서		각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

❑ 기대효과

○ 부서별 업무특성을 살린 청렴시책 추진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3 주요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비고
		총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918**	**918**	**-**	**-**	**918**	**-**	
홍보분야		**860**	**860**	**-**	**-**	**860**	**-**	
지역 이미지 옥외광고	주요 도로 전광판, KTX,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 군정 주요 시책 홍보	300	300	-	-	300	-	
군정시책 및 공지사항 홍보	일간지, 주간지 등을 통해 군정 홍보	400	400	-	-	400	-	
지역 이미지 광고방송	지상파, 종편 등을 통해 군정 홍보	100	100	-	-	100	-	
성주군 공식 SNS 운영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군정 소식 전달	60	60	-	-	60	-	
감사분야		**58**	**58**	**-**	**-**	**58**	**-**	
반부패·청렴주간 운영	청렴 캠페인, 청렴콘서트 등	32	32	-	-	32	-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	청렴도 취약분야 파악을 위한 조사	15	15	-	-	15	-	
청렴마이크로러닝 프로그램 운영	링크접속 방법으로 청렴 개별교육	10	10	-	-	10	-	
1부서 1청렴 시책추진	청렴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1	1	-	-	1	-	

자치행정과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3. 소통과 화합의 열린 군정 구현

4.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5.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6. 직원 후생복지 지원

7. 2024년 정보보안 실태 점검

8.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간담회」 운영

2. 스마트한 삶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3] 주요사업 조서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업무

❑ 기구 및 인력 - 4팀, 26명

(정원/현원)

구 분	계 정원/현원	총무팀	행정팀	교육후생팀	정보통신팀
계	24 / 26	13	4	3	6
정무직	1 / 1	1	-	-	-
5급	1 / 1	1	-	-	-
6급	5 / 7	3	1	1	2
7급 이하	15 / 15	6	3	2	4
연구직	1 / 1	1	-	-	-
별정직	1 / 1	1	-	-	-

❑ 주요기능(분장업무)

구 분	담 당 사 무	비고
총 무 팀 (김 창 구)	의전 및 행사, 선거, 보안, 여론 및 동향관리, 자매결연, 직소민원 처리, 반상회, 이장관련 업무, 공인 및 관인관리, 공무국외출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당직관리, 공문서 접수 및 체송 등	
행 정 팀 (김 성 자)	인사, 조직 및 정원관리, 공무원 연금, 교육, 포상, 공무직·기간제근로자관리 등	
교육후생팀 (김 윤 철)	학교교육경비 지원,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운영, 별고을장학금지급・기금관리, 공무원단체, 제안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정보통신팀 (최 성 림)	전산・통신시설 운영, 새올·온나라 시스템 운영,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표 홈페이지 관리	

2. 기본현황

❑ 행정기구

('24. 1. 기준)

본청 (18)	직속기관(2)		사 업 소(3)			읍면 (10)
	보건소	농업기술센 터	상하수도 사 업 소	체육시설 사 업 소	자원순환 사 업 소	
1실17과 (79팀장)	2과 (9팀장)	2과 (8팀장)	(4팀장)	(3팀장)	(3팀장)	1읍9면 (34팀장)

❑ 정 · 현원

('24.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본청 · 사업소			읍면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계	699	694	△5	525	521	△4	174	173	△1
일반직	662	660	△2	488	487	△1	174	173	△1
정무직	1	1	-	1	1	-	-	-	-
별정직	1	1	-	1	1	-	-	-	-
지도직	27	26	△1	27	26	△1	-	-	-
연구직	8	6	△2	8	6	△2	-	-	-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적립금 운영 현황

('24. 1. 기준)

구 분	조 성 액				비 고
	기부금	군 출연금	기 타	총 액 (12월 기준)	
2021년	10억	8억	-	79억	
2022년	3억	8억	10억 (교발위 이관 등)	100억	
2023년	3억	-	64억 (인재육성기금 출연)	167억	

❑ 별고을교육원 운영 현황

('24. 1. 기준)

구 분	교육인원	수업시간	수업과목	비 고
계	126명	일일 3교시	5개	
중 학 생	22명(학년별)	18:15~22:0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1교시 45분 2·3교시 80분
고등학생	20명(학년별)	19:10~22:55		
운영주체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강사구성	11명(원장1명, 전임강사 7명, 시간강사 3명)			
소요예산	11.1억원(인건비 8.7억원 / 운영비 2.4억원)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

◇ 상생발전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교류 사업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모색

❑ 교류현황

구 분	자매기관	대 표 자	교류기간	비고
자매결연	서울 관악구	구청장 박준희	2005 ~ 현재	
	해군 5전단	전단장 김영수	2013 ~ 현재	
	전남 무안군	군 수 김 산	2013 ~ 현재	
	강원 양양군	군 수 김진하	2014 ~ 현재	
	대구 달서구	구청장 이태훈	2019 ~ 현재	
관학협약	원광대학교	총 장 박성태	2009 ~ 현재	
	계명대학교	총 장 신일희	2010 ~ 현재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총 장 최원석	2016 ~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총 장 박승호	2021 ~ 현재	
우호교류	서울특별시	시 장 오세훈	2019 ~ 현재	
업무협약	원 불 교	교정원장 나상호	2020 ~ 현재	

❑ 추진계획

○ 내실있는 국내교류 활성화
- 행사 · 축제 시 상호 방문 및 축하 서한문 발송 등
- 우리 군 시설 이용료 감면 홍보
-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부서별 교류분야 발굴

○ 성주참외 홍보 · 판매 행사 상시 추진

○ 자매결연단체 명절 및 각종 행사시 직거래장터 참여 확대 등

❑ 기대효과

○ 자매결연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 획일적인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 주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 자율조정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원격근무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 유연근무제 실시계획 수립과 부서별 실적 관리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유도

-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및 임신부, 직장맘 적극 사용 권유
- 유연근무 신청자에 대해 원칙적 허가 및 부당한 불이익 금지

❑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구 분	대 상	내 용	비고
모 성 보호시간	임 신 여성직원	임신 여직원에게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시간 (2시간/일)	
임신검진 휴 가		임신 검진을 위한 검진휴가 부여(최대 10일)	
육아시간	생후 72개월 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육아시간 허용 (2시간/일, 24개월)	
가족돌봄 휴 가	전 직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년)	
군 입영휴가		직원의 자녀가 입영 시, 입영 당일 자녀 군 입영 휴가 부여 (1일)	

❑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 연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최소 10일 이상)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점검 및 사용 유도

○ 자율적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계절별 휴가주간 실시 등)

3. 소통과 화합의 열린 군정 구현

◇ 군민 및 직원과의 폭넓은 소통과 대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받는 열린 군정 구현

❑ 2024년 주민과의 정책소통간담회 개최

○ 기　　간 : 2024년 하반기 중
○ 장　　소 : 10개 읍면
○ 참　　석 : 550명(읍면별 주민 40~60명 참석)
○ 내　　용 : 군정 운영방향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 더 가까이! 더 낮게! 더 멀리! 『민생 현장 탐방』

○ 기　　간 : 연중(월 2회)
○ 장　　소 : 다중이용시설, 주요사업현장, 민원 발생지역 등
○ 참　　석 : 군수, 민생현장 관련 부서장
○ 주요내용 :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의 다양한 소리 청취 및 반영

❑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소민원실」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직소민원실
○ 대　　상 : 군민 누구나 가능
○ 내　　용 : 군민의 불편 및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

❑ 군수와 함께하는 『혁신 공감 토크』 진행

○ 기　　간 : 연중 2회(상·하반기 1회)
○ 장　　소 : 문화강좌실, 관내 유명 관광지
○ 대　　상 : 신규 발령 직원
○ 주요내용
- 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군정 반영 및 조직문화 개선
- 군정 운영방향 및 정보공유로 현안사업 추진 원활화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 신뢰·소통·협력을 통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
◇ 업무·성과중심의 인사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운영
◇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통한 자기계발 및 직무역량 함양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 정기·수시인사 시 인사일정 등 인사계획 사전공개
- 지원↔사업부서, 군↔읍·면 상호교류 근무,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등

○ 적극적인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통한 인사신뢰도 향상(인사도우미 운영)

○ 신규임용자 기초업무 교육강화, 실질적인 업무 인계인수 문서화와 통일된 양식 제공 등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 노력

❑ 업무·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근평) 운영

○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근평) 운영

- 고강도 현안업무 담당자, 시책개발 및 국도비 확보 등 실적거양 직원 우대
- 근무태만, 불친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페널티 부여

○ 인사시스템을 통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 공개(6월, 12월)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수요에 맞춘 유연한 조직 운영

○ 격무·기피부서 등 순환전보 실시 및 업무강도 높은 현안업무에 대해 상위직급 배치를 통해 조직경쟁력 도모

○ 행정수요 변화 대처를 위한 유연한 조직·인력운영(TF, 지원근무 등)

❑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통한 직무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 직무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자기계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조직경쟁력 제고

5.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 다양하고 차별화된 명품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방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 (연중)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예 산 액 : 2,760백만원

❑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760,768	
1	별고을장학금 지급	200,000	
2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979,500	
	- 성주교육지원청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247,000	
	- 초등학교 (11개교)	122,500	
	- 중학교 (8개교)	134,000	
	- 고등학교(성주고, 성주여고, 명인고)	476,000	
3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346,268	
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50,000	
5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별고을교육원 운영	1,085,000	

6. 직원 후생복지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대 상 : 1,200명 정도(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 기 간 : 2024. 1. ~ 12.
○ 복지포인트 부여 항목
- 공무원·군의원 : 기본(1,050천원), 근속(최대300천원), 가족, 특별
※ 가족 : 배우자 100, 첫째 50, 둘째 100, 셋째 이상 200, 직계존속 50
※ 특별 : 셋째 이상 출산 시 2,000천원 1회 지급
- 공무직근로자 : 기본 850천원 지원
-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 : 근무개월 × 25천원 ⇒ 최대 300천원 지원
○ 예 산 액 : 1,220,000천원
○ 집 행 액 : '22년 1,021,011천원 / '23년 1,181,413천원 ('23. 12. 기준)

❑ 단체보장보험 가입

○ 대 상 : 900명 정도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 기 간 : 2024. 3. 1. ~ 2025. 2. 28. / 1년간
○ 종 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외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지급액 : '22년 592건, 180,336천원 / '23년 749건, 243,721천원 ('23. 12. 기준)

❑ 종합건강검진 실시

○ 대 상 : 900명 정도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 검진병원 : 경북대학병원 외 14개 병원
○ 예 산 액 : 265,000천원 (350,000원/인 지원)
○ 집 행 액 : '22년 726명, 253,138천원 / '23년 671명, 234,414천원 ('23. 12. 기준)

7. 2024년 정보보안 실태 점검

◇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컴퓨터의 정보보안 실태 점검으로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 점검기간 : 2024. 5. 1. ~ 6. 30.

○ 점검대상

-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모든 행정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등

○ 점검방법 : 자가진단표에 의한 자체 점검(2023년 기준 5개 영역, 40개 지표)

○ 주요 점검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현황 및 규정 준수 여부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및 용역업체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용 컴퓨터 정보보안 규정 준수 여부 등

❑ 추진계획

○ 2024. 5. :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및 자가진단 항목 확정

○ 2024. 6. : 정보보안 실태 점검

❑ 기대효과

○ 정보보안 취약 분야 자가진단을 통해 침해사고,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정보보안 수준 제고

8.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의 서비스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4.

○ 사 업 비 : 68,000천원(소프트웨어 1식, 라이선스 282개)

○ 사업내용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 주요개선사항

- 차단 정책 세분화로 공직자통합메일에서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 특정 웹사이트 주소 선별 차단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내 검색한 기록 보관 등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도박사이트, 상용 메일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

❑ 추진계획

○ 2024. 1. ~ 2. : 환경조사 및 보안성 검토

○ 2024. 3. ~ 4. : 시스템 설치 및 시험 운영

❑ 기대효과

○ 바이러스의 주 감염경로인 메신저, 커뮤니티, P2P 사이트 등의 접속을 사전 차단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공직자통합메일에서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 증대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간담회」 운영

◇ 지역사회 내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개 요

○ 시 기 : 2024년 상반기 중

○ 대 상 : 관내 사회단체 대표(59개 정도)

○ 장 소 : 군청 문화강좌실

○ 내 용

-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주요 시책 발굴
- 단체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운영방안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생생간담회	→	건의사항 검토의견 제출	→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군수님 ↔ 사회단체(단체 대표 참석)		자치행정과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부서) → 사회단체

○ 협조사항

- 담당 부서 건의사항 검토 및 결과 제출 협조
- 부서·관련 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전 민원 해결

※ 실과소 ↔ 관련 사회단체 간 「소통의 날」 운영

- 운영시기 : 매월 1회
- 대 상 : 실과소·관련 사회단체(ex) 안전과 ↔ 의용소방대)
- 내 용
 -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실과소와 관련 단체간 정기적인 만남 추진
 - 간담회 결과 및 건의사항 파악 후 해당 실과소 통보
 - 무분별한 건의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민원 최소화

2. 스마트한 삶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확대

◇ 일상생활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랑의 그린(중고) PC 나누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확대 보급으로 군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사랑의 그린(중고) PC 나누기

○ 사업기간 : 2024. 2. ~ 11.

○ 보급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
-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지원시설

○ 내 용

- 중고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게 무상 보급
- 군 PC 무상양여 → 정비센터에서 PC 정비 → 신청자에게 직접 배부

○ 추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련 부서 및 단체 대상 홍보
- PC 배부 시 기본 교육 실시 및 디지털 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맞춤형교육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사업기간 : 2024. 5. ~ 8.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 사업내용

-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지원제품 : 125종(시각 66,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8)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기초수급자는 추가 지원)

❑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 향상

○ 기기 보급과 더불어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역량 제고

3 주요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비고
		총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3,290**	**3,290**	-	-	**3,290**	-	-
총무분야		**182**	**182**	-	-	**182**	-	-
국·내외 교류협력	자매결연 교류	16	16	-	-	16	-	-
반상회보 발간	별고을 소식지 제작	28	28	-	-	28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운영)비 등 지원	38	38	-	-	38	-	-
모범이장지원	장학금·단체보험 등	100	100	-	-	100	-	-
행정분야		**280**	**280**	-	-	**280**	-	-
공직자 선진마인드 함양교육	공무원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지원	275	275	-	-	275	-	-
모범공무원지원	친절공무원 등 포상	5	5	-	-	5	-	-
교육후생분야		**2,760**	**2,760**	-	-	**2,760**	-	-
지역교육 기반구축	별고을장학금 지원	200	200	-	-	200	-	-
	별고을교육원 경쟁력 강화	1,085	1,085	-	-	1,085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50	150	-	-	150	-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979	979	-	-	979	-	-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346	346	-	-	346	-	-
정보통신분야		**68**	**68**	-	-	**68**	-	-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68	68	-	-	68	-	-

도시계획과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 도시개발사업 추진
3.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4. 두바퀴로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 조성
5. 도시재생사업(2단계)
6. 성주읍 경산길(4차) 경관정비사업
7.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9.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 2024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11. 안전취약시설(성주연립주택) 정비사업
12.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지정게시대 확충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국민 임대주택 건립(타당성용역 시행)
2. 공공건축공사 사전검토제 추진

[3] 주요사업 조서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업무

❑ 기구 및 인력 - 5팀, 21명

(정원/현원)

구 분	계 정원/현원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공단조성팀	건축안전팀	공공건축팀
계	21/21	5	5	3	3	5
5급	1/1	1	-	-	-	-
6급	5/6	2	1	1	1	1
7급 이하	15/14	2	4	2	2	4

❑ 주요기능(분장업무)

구 분	담 당 사 무	비고
도시계획팀 (배 수 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관리 온천개발이용,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도시재생팀 (전 용 완)	도시재생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경관정비(지중화)사업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공단조성팀 (이 동 준)	산업단지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 산업·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건축안전팀 (최 도 식)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건축인허가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검토 및 심사 공사감리 관리·감독 및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팀 (박 미 자)	공공건축물 건축분야 설계 및 감리용역 심사 등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및 관리 창의문화센터 관리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 기본현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 로

구 분	노선수	연장(m)	비 고
합 계	507	483,074	
대 로	21	47,440	· 폭 원 : 25m ~ 40m · 성주18, 가천1, 용암2
중 로	79	96,734	· 폭 원 : 12m ~ 25m · 성주44, 선남7, 용암5, 수륜3, 가천3, 대가2, 벽진5, 초전7, 월항3
소 로	407	338,900	· 폭 원 : 12m 미만 · 성주146, 선남27, 용암32, 수륜46, 가천41, 대가23, 벽진59, 초전19, 월항12, 금수2

○ 공 원

구 분	개 소	면적(㎡)	비 고
합 계	28	388,695	
근린공원	5	116,370	· 성주 3, 가천 1, 초전 1
어린이공원	13	24,160	· 성주 7, 수륜 1, 가천 3, 대가 2
소 공 원	7	9,189	· 성주 3, 선남 1, 수륜 1, 대가 2
체육공원	1	20,687	· 성주 1
역사공원	1	207,089	· 성주 1
문화공원	1	11,200	· 월항 1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구분 \ 읍면	계	성주	선남	용암	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	월항
개 소	58	18	10	4	2	3	2	3	5	6	5
게시수	289	92	50	20	10	13	11	15	25	30	23

산업단지 현황

명 칭	위 치	조성년도	면 적	업체수	종업원수	업 종
성주월항일반산업단지	월항면 유월리 일원	1998	78,062㎡	16	63명	석재품 기타 등
성주일반산업단지	성주읍 예산·학산·금산리 일원	2012	851,166㎡	53	1,122명	자동차 기계 등
성주2일반산업단지	성주읍 학산·금산리 일원	2018	957,925㎡	28	541명	자동차 기계 등

농공단지 현황

명 칭	위 치	조성년도	면 적	업체수	종업원수	업 종
선남농공단지	선남면 도성리 일원	1987	72,573㎡	10	233명	섬유 등
성주농공단지	성주읍 성산리 일원	1991	146,388㎡	21	353명	기계 등
월항농공단지	월항면 장산리 일원	1994	257,763㎡	40	798명	기계 등

Ⅱ.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 국책사업, 역점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전역 (616.15㎢ 정도)
○ 용역기간 : 2024. 03. ~ 2026. 09. (30개월)
○ 용 역 비 : 1,500백만원(군비) ※ '24년 예산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2040년 성주 군기본계획 수립
- 2030년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24. 03. : (군기본계획) 기초조사, 현황분석
○ 2024. 09. : (군기본계획) 주민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
○ 2025. 01. : (군기본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승인 신청
○ 2025. 05. : (군기본계획)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5. 06. : (군기본계획) 결정·고시
○ 2025. 07. :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현황분석
○ 2025. 12. : (군관리계획) 주민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
○ 2026. 05. : (군관리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승인 신청
○ 2026. 07. : (군관리계획)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09.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 기대효과

○ 국책사업 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도모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소방차량 진입의 원활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

❑ 도시토목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4개지구**	**1,450**	
선남면 군계획도로(소로1-8,2-4호선) 개설공사	선남면 관화리 (선남파출소 맞은편)	L=200m, B=10.0m	250	계속
가천면 군계획도로(소로2-5,3-21호선) 개설공사	가천면 창천리 (금봉천 옆)	L=450m B=6m	200	신규
초전면 군계획도로(소로3-11호선) 경관개선공사	초전면 대장리 (성모의원~우진목재)	L=500m	300	신규
성주 탐방로(성주~벽진) 정비공사	성주읍 경산리 ~ 벽진면 봉학리	탐방로정비 1식	700	공약

❑ 도시관리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8개지구**	**1,550**	
성주읍소재지(대로1-3호선) 아스콘포장공사	성주읍 예산리 (백전삼거리~예산삼거리)		500	계속
성주읍소재지(소로1-12,2-51호선) 아스콘포장공사	성주읍 경산리 (경산정미소 뒤편)		130	신규
성주읍 군계획도로(소로1-11호선) 정비공사	성주읍 예산리 (보은뜰주간보호센터 앞)		70	신규
선남면 소재지 소공원 경관조명설치공사	선남면 관화리		100	계속
용암면소재지 소공원 조성공사	용암면 용정리		450	계속
용암면소재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용암면 용정리		100	신규
가천면소재지(소로3-28호선) 아스콘포장공사	가천면 창천리 (가천탕 앞)		100	신규
벽진면소재지 도로측구 정비공사	벽진면 수촌리		100	신규

3.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 성주2일반산업단지 및 한개마을의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연결도로개설과 도로선형 개선을 통해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함

❑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읍 학산리 ~ 월항면 안포리
- 사업기간 : 2019. 02. ~ 2024. 12.
- 사 업 비 : 145억원(국비 100, 군비 45) ※'24년 예산 : 10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64km, B=10.0m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7. 0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02. : 공사 착공【현 공정률 : 56%】
- 2024. 12. : 공사 준공

❑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개선사업(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월항면 안포리 일원(산업단지 연결도로 ~ 군도4호선)
- 사업기간 : 2023. 01. ~ 2024. 12.
- 사 업 비 : 12억원(도비 6, 군비 6) ※'24년 예산 : 2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250.0m, B=10.0m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09.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10. : 공사 착공【현 공정률 : 20%】
- 2024. 12. :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도로개설 및 개량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접근성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4. 두바퀴로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 조성

◇『선남면 선원리 ~ 성주읍 ~ 벽진면 봉학지』 구간의 탐방로 재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낙동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내방객을 유도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선남면 선원리 ~ 성주읍 ~ 벽진면 봉학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총사업비 : 30억원(2023년 5억, 2024년 7억)

○ 사 업 량 : 탐방로 정비 L=36.5km

- 1구간 : 성주읍 ~ 벽진면 봉학지 구간 정비(L=11.4km)
- 2구간 : 성주읍 ~ 선남면 선원리 구간 정비(L=27.1km)

○ 사업내용 : 미연결구간 정비, 교행대 추가 설치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구간(성주읍 ~ 벽진면 봉학지, L=11.4km)

- 2023. 09. : 공사 착수【현 공정률 : 50%】
- 2024. 08. : 사업 완료

○ 2구간(성주읍 ~ 선남면 선원리, L=27.1km)

- 2025. 01. : 공사 착수 예정
- 2026. 12. :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5. 도시재생사업(2단계)

◇ 성주읍사무소 신축, 체육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문화·복지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재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읍 성산리 209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01. ~ 2024. 12.
○ 총사업비 : 379억원(생활SOC연계사업 포함)
- 도시재생뉴딜사업(130), 성주읍사무소(99), 생활문화센터사업(21), 작은도서관(11), CCTV관제센터(30), 다함께돌봄센터(12), 거점주차장(76)

○ 사업내용

세부사업	위치	사업내용	층수	(연)면적	주차면수	비고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성산리 2097-2 (읍사무소)	행정복합센터 (도시재생,읍사무소, 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관제센터,돌봄센터 등)	지하1 지상4	4,897㎡	41대	
건강문화 캠퍼스	성산리 2101 (성주체육관)	주차장, 체육관 리모델링 (도시재생)	지상3	4,911㎡ 1,353㎡	170대	준공
별의별 문화마당	성산리 2102-1 (舊농협주차장)	주차장, 휴게마당 (거점주차장,도시재생)	지하2	4,341㎡	126대	
경산리 마을 만들기	경산리 53 (군민회관)	주차장 조성 (도시재생)	-	1,183㎡	30대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0.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승인(국토부)
- 2021. 0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11. : 공사 착공
- 2023. 03. : 건강문화캠퍼스 준공
- 2024. 09. :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준공
- 2024. 12. : 전체사업 완료

❑ 기대효과

○ 도시재생(1단계)사업과 생활SOC사업 연계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기대

6. 성주읍 경산길(4차) 경관정비사업

◇ 성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성밖숲 인근 지중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및 지역 경관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읍 경산길 일원

- 1구간(성주군청~경산교) L=500m

- 2구간(경산교~경산2교) L=700m

○ 사업기간 : 2022. 01. ~ 2024. 12.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10, 도비 6, 군비 9, 민자 25)

○ 사업내용 : 한전·통신주 지중화사업(L=1.2km)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1. 11. : 지중화사업 선정

○ 2022. 03. :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한전 및 KT·통신사)

○ 2022. 06. : 실시설계용역 착수(한전 및 KT·통신사)

○ 2023. 09. : 공사 착공

○ 2024.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차량 및 주민 통행량이 많고 혼잡한 성주읍 소재지에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지역경관 개선 기대

7.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 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밀집한 성주읍 성산리 주변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볼링장 등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 위 치 : 성주읍 성산리 69번지 일원

○ 규 모 : A=2,961㎡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간)

○ 사 업 비 : 411억원

- 주한미군 : 272(국 136, 도 14, 군 122) / 지방소멸기금 129/ 자활기금10(국 5, 군 5)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볼링장 등

- 건축규모 : 지하1/지상9층, 연면적 10,120㎡ ※현재 실시설계용역중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1. 03. : 토지보상 완료

○ 2023. 05.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4. 10.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노인 및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사드기지 주변지역 4개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 기간 연장 가능**

○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2024년 (억원)	비 고 (부서)
계	13건		4,475	224	
1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건강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411 (기금113 기확보)	90	행안부 (도 시 계획과)
2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쉼터, 다목적 체육관 등	272	60	
3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	소성리 힐링거점센터 - 소성지 평화공원 조성	150	20	
4	농어촌도로 204호선 (초전~벽진간) 도로건설	도로 확포장 L=4.26km (1단계 L=0.36km 시행 중)	150	29	행안부 (건설과)
5	사드기지 진입 우회 도로 개설	도로개설 L=4.0km(2차로)	300	20	
6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도로 확·포장 L=16.0km (1단계 L=4.0km 시행 중)	2,100	-	
7	성신원 정비사업	- 유해시설 정비(축사 및 빈집 등),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490	-	행안부 (산 림 축산과)
8	한개마을저잣거리 전시 및 체험장 건립	- 홍보전시관 건립 A=600㎡ - 체험장 조성 A=500㎡ - 진입도로 개설L=1.38km	42	-	행안부 (문 화 예술과)
9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저잣거리 조성, 체험관 및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60	-	문화재청 (문 화 예술과)
10	참별 레포츠 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36홀, 야외운동시설, 주차장 및 진출입로 등	200	-	행안부 (체육시설 사업소)
11	소성리 휴빌리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소규모하수처리장증설 Q=100㎥ - 하수관로 L=12km	100	-	환경부 (상하수도 사 업 소)
12	소성리 휴빌리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 배수관로(D100~80㎜) L=15㎞, - 급수관로 L=20㎞, 가압장 5개소	100	-	
13	월항 장산 마을 하수도 정비	소규모하수처리장 신설 Q=130㎥ 하수관로 L=6.0km	100	5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0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

○ 2023. 09.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2024. 01. ~ 2024. 12. :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 2024년 예산: 6개사업 224억

○ 2025. 01. ~ 2026. 12. : 공사시행

❑ 기대효과

○ 사드배치로 인해 상처받고 분열된 지역 민심회복 및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9.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 위　　치 : 성주읍 학산리, 월항면 보암리・용각리 일원
- ○ 면　　적 : 483,968만㎡(약 15만평)정도
- ○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
- ○ 사 업 비 : 약 1,147억원 정도 (기반시설 설치비 포함)
- ○ 개발방식 : 공영개발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2018. 12. : 성주3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재착수
- ○ 2022. 8. : 산업단지 설치 및 운영위원회 개최(예정지 입지선정)
- ○ 2023. 1.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 2023. 7. : 타당성조사 의뢰(군→도→행안부)
- ○ 2023. 9. :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협약체결(군↔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2024. 5. :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및 투자심사 의뢰(행안부)
- ○ 2024. 9. :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용역 시행
- ○ 2025. 12. :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 ○ 2028. 12. : 사업준공

❑ 기대효과

- ○ 공장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도모
- ○ 개별공장 입지를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로 군민에게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

10. 2024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 감리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및 사고위험이 높아 관내 착공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육안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 대 상 : 관내 건설공사중인 건축주직영공사 건축물

○ 점검기간 : 2024. 1. ~ 2024. 12.

○ 점 검 반 : 건축안전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건설현장 내 안전부분에 대한 전반적 점검
- 인근 토지의 민원소지사항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
- 화재 및 구조물 붕괴 사전예방

❑ 추진계획

○ 2024. 01. : 소규모 건설현장 선정(최근 2년간 건축신고된 부지)

○ 2024. 03. ~ 07. :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024. 08. : 폭염 및 태풍,호우에 따른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 2024. 09. : 안전점검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통보

○ 2024. 10. ~ 11. : 시정조치 및 통보에 대한 재점검 실시

11. 안전취약시설(성주연립주택) 정비사업

◇ 안전취약시설인 성주연립주택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읍 예산리 357-11번지

○ 부지면적 : 1,254㎡ (약 380평)

○ 건물내역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세 대 수	층수/동수	구 조	사용승인일
318.68㎡	1,078.84㎡	공동주택(연립주택)	20세대(실거주 없음)	3층/1동	철근콘크리트	1982.1.21

○ 소요예산 : 1,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사업내용 : 건물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3. 01. :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공고

○ 2023. 02.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24. 01. : 보상협의 진행중(22세대 중 20세대 매입완료)

○ 2024. 10. : 건물철거 및 착공

○ 2024. 12. : 준공

❑ 기대효과

○ 주거환경의 안전성 증대 및 도시미관 향상

○ 읍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12.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지정게시대 확충

◇ 기존 관내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안전점검하고,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유도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 위　　치 : 관내 기존 옥외광고물

○ 사업기간 : 2024. 1 ~ 7

○ 점검대상 : 고정광고물 58개소, 유동광고물 349개소

○ 총사업비 : 5백만원 정도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 위　　치 : 관내 수요 조사 후 결정

○ 사업기간 : 2024. 1. ~ 3.

○ 총사업비 : 3천3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관내 게시대(88개소)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고단게시대를 주요 사거리 등 요지에 설치

○ 추진계획

2024. 1. : 10개 읍면 설치 희망지역 수요 조사

2024. 2. : 위치 확정 및 도로점용 절차 마무리

2024. 3. : 설치 완료

❑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 문화 확립과 주요행사 및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

2 특수시책 추진계획

1. 국민 임대주택 건립(타당성용역 시행)

◇ 관내 무주택 서민계층,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코자 함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3. 9. ~ 2024. 3.(6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

○ 과업내용

- 입주 희망자 사전조사 및 분석
-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작성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개략사업비 산정, 투자수익 분석) 검토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9.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4. 3. : 사업계획(안) 확정(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건물취득) 승인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건축 설계 및 행정절차(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소요기간(1년)

○ 사업 착수

○ 입주자 모집

○ 준공 및 입주

소요기간(1년6월)

❑ 기대효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인구유입 유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2. 공공건축공사 사전검토제 추진

◇ 공공건축공사 사전검토를 통해 건축기획 및 설계에서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공사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걸맞은 공간창출과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건축공사 발주시 인허가절차,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방법, 공법, 사업비 적정성 등 공공건축물 관련 공사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축 업무의 전문적인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원활한 공공건축공사의 추진과 품질향상에 기여

❑ 업무범위

○ 건축기획업무 기술검토(용역비, 과업지시서 등 기획 주요내용 검토)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원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설계공모대상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

○ 공공건축 심의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건축기획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성주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공공건축물 경관 심의

-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건축물

○ 공공디자인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공공건축물 10억 이상, 공공시설물 3억 이상, 공공매체 3억 이상)에 대해 디자인 및 배치계획 등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함

○ 설계용역, 감리용역비, 공사비, 공법 등 사전검토 지원

- 설계용역(입찰, 일반공모, 2단계공모, 제안공모 등 발주방식 검토)
- 공공건축물 용도별 공사비 산출 및 공법 등 적정성 검토 등

❑ 기대효과

○ 원활한 공공건축행정절차 추진과 내실있는 설계검토를 통한 예산절감과 품격있는 공공건축공간 창출

3 주요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비고
		총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5건**	**144,023**	**33,571**	**8,824**	**2,203**	**22,544**	**-**	
도시계획분야	**15건**	**23,950**	**4,500**	**-**	**100**	**4,400**	**-**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기본계획 수립, 군관리계획 재정비	1,500	300	-	-	300	-	
선남면 군계획도로 (소로1-8,2-4호선) 개설공사	L=200m B=10m	2,300	250	-	-	250	-	계속
가천면 군계획도로 (소로2-5,3-21호선) 개설공사	L=450m B=6m	500	200	-	-	200	-	신규
초전면 군계획도로 (소로3-11호선) 경관개선공사	L=500m	300	300	-	-	300	-	신규
성주 탐방로(성주~벽진) 정비공사	탐방로정비 1식	1,200	700	-	-	700	-	공약
성주읍소재지(대로1-3호선) 아스콘포장공사	L=800m	800	500	-	-	500	-	계속
성주읍소재지(소로1-12,2-51호선) 아스콘포장공사	L=400m	130	130	-	-	130	-	신규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1-11호선) 정비공사	교차로정비 1식	70	70	-	-	70	-	신규
선남면 소재지 소공원 경관조명설치공사	공원정비 1식	500	100	-	-	100	-	계속
용암면소재지 소공원 조성공사	공원조성 1식	650	450	-	-	450	-	계속
용암면소재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L=200m	100	100	-	-	100	-	신규
가천면소재지(소로3-28호선) 아스콘포장공사	L=400m	100	100	-	-	100	-	신규
벽진면소재지 도로측구 정비공사	L=300m	100	100	-	-	100	-	신규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	L=1.5km B=10.0m	14,500	1,000	-	-	1,000	-	계속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개선사업	L=250m B=8.0m	1,200	200	-	100	100	-	계속
도시재생분야	**9건**	**120,040**	**29,038**	**8,824**	**2,103**	**18,111**	**-**	

사 업 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비고
		총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도시재생뉴딜사업(2단계)	별의별행정복합센터 외	13,000	538	324	53	161	-	재생사업
성주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성주읍사무소 조성	9,900	5,700	-	-	5,700	-	재생연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2,100	300	-	-	300	-	재생연계
별의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7,600	4,000	-	1,200	2,800	-	재생연계
CCTV관제센터 건립사업	CCTV 관제센터 조성	3,000	500	-	-	500	-	재생연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1,140	1,000	-	-	1,000	-	재생연계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복합센터 1식	41,100	9,000	4,500	450	4,050	-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	복합타운 1식	27,200	6,000	3,000	300	2,700	-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	1식	15,000	2,000	1,000	100	900	-	
공공건축분야	**1건**	**33**	**33**	**-**	**-**	**33**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게시대 정비	33	33	-	-	33	-	